

#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번호	16-19
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2. .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장애아동 및 지역주민에게 의료재활·직업재활·교육·체육·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「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」 운영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민간위탁의 목적

- (1) 상암2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우리구와 재단법인 푸르메가 민간투자방식으로 건립 추진한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이 2015. 12. 30. 준공됨에 따라, 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 위탁이 요구됨.
- (2) 본 사업시설(어린이재활병원, 장애인체육시설, 장애인직업재활시설, 어린이도서관)의 민간 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, 장애인의 특성과 복지·의료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음.
- (3) 따라서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「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」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.

## 나. 민간위탁의 내용

### (1) 시설현황

- 위 치 :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(상암동 1738)
- 면 적 : 3,212.9㎡
- 규 모 : 지하3층 지상7층, 연면적 18,571.52㎡
- 사업기간 : 2010. 12. ~ 2016. 12. (2015.12.30. 준공)
- 주요시설 : 어린이재활병원, 장애인체육시설, 장애인직업재활시설, 어린이도서관

### (2) 민간위탁 범위 :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

### (3) 위탁기간 : 위탁체결일로부터 3년

- 「공유재산법」 제21조에 의거 사업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으로, 푸르메재단에서 최장 20년 무상사용함(위탁계약은 무상사용허가기간 범위내에서 자동 연장)

※ 2014.1.29. : 재단법인 푸르메와 「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·운영」 실시협약 체결

## 다. 추진일정

- (1) 민간위탁 동의(안) 제출 : 2016. 2월중
- (2) 위탁계약 체결 : 2016. 3월
- (3) 물품구입 및 운영준비 : 2016. 3~4월
- (4)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개관식 : 2016. 4월말 예정

## 라. 소요예산 : 1,343백만원(시비 952백만원, 구비 391백만원)

주요시설	면적(㎡)	보조금(백만원)	비고
어린이재활병원	9,715.72	731(시비)	
장애인체육시설	1,791.30	221(시비), 15(구비)	문화교실 포함
장애인직업재활시설	718.76	177(구비)	
어린이도서관	548.61	199(구비)	
계	12,774.39	1,343	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##### <장애인복지법>

제57조(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#### <사회복지사업법>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
③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### <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>

제5조(운영의 위탁 등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#### 나. 기타사항

- 푸르메재단↔마포구 “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·운영 실시협약”(2014.01.29.)

##### 제10조(관리운영권 설정기간)

⑤ 본 사업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5항에 의거 3년 마다 위탁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에서 정한 무상사용·허가기간 범위 내에서 자동 연장한다.